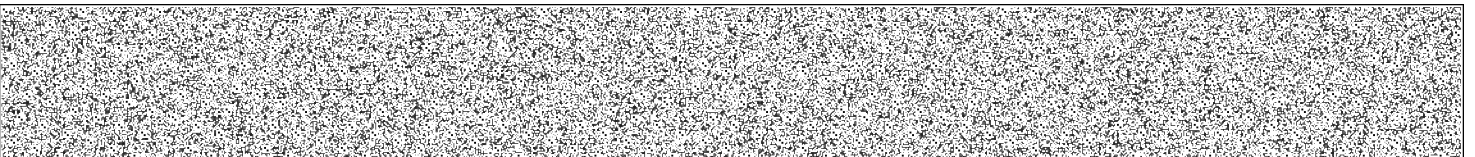
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[제출용]

등기번호	823415					
등록번호	110111-8234158					
상 호	주식회사 메디빌더	.	.			
본 점	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56길 20, 3층(신사동)	.	.			
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, 8층(역삼동, 여삼빌딩)	2023.10.14 변경	2023.10.23 등기			
공고방법	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.	.	.			
1주의 금액	금 1,000 원	.	.			
발행할 주식의 총수	10,000,000 주	.	.			
	250,000,000 주	2022.06.22 변경	2022.06.22 등기			
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		자본금의 액				
발행주식의 총수	250,000 주	변 경 연 월 일				
보통주식	250,000 주	등 기 연 월 일				
발행주식의 총수	291,240 주	.		.		
보통주식	291,240 주	금 250,000,000 원		.	.	
발행주식의 총수	319,637 주	2022.07.05 변경		.	.	
보통주식	319,637 주	금 291,240,000 원		2022.07.13 등기	.	.
발행주식의 총수	319,637 주	2023.02.15 변경		.	.	
보통주식	319,637 주	금 319,637,000 원		2023.02.16 등기	.	.
목 적						
1. 광고 대행업						
1. 의료 컨설팅업 및 경영 컨설팅업						
1.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						
1. 의류 온라인, 오프라인 판매업						
1. 의료기기 수출업 및 유통업						
1.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						
1. 기타 광고업						
1.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						
1. 경영컨설팅업						
1. 고객서비스 교육업						
1. 광고물 작성업						

[인터넷 발급]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

발행번호 1130005015701020221100422005211403U2A8D1D1N1A0L101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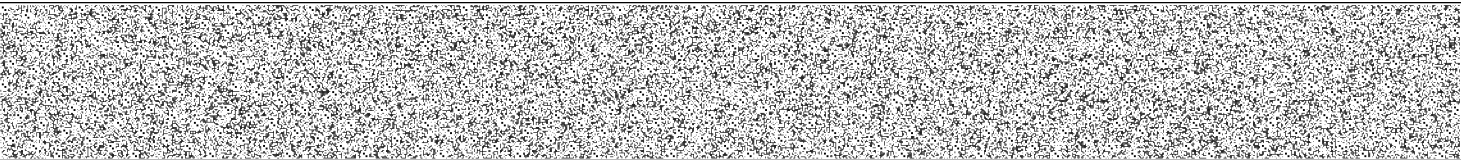
발급확인번호 4156-AAXL-CVPO

발행일:2024/01/22

등기번호	823415
1.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
1.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
1. 소프트웨어 자문업	
1. 부동산 임대업	
1.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	
1.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전자상거래업	<2022.07.01 삭제 2022.07.13 등기>
1.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	<2022.07.01 삭제 2022.07.13 등기>
1. 외국인환자 유치업	<2022.07.01 추가 2022.07.13 등기>
1. 위 각호에 부대하는 전자상거래업	<2022.07.01 변경 2022.07.13 등기>
	<2024.01.05 삭제 2024.01.19 등기>
1.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	<2022.07.01 변경 2022.07.13 등기>
	<2024.01.05 삭제 2024.01.19 등기>
1. 화장품 도매업	<2024.01.05 추가 2024.01.19 등기>
1. 의료기기 도매업	<2024.01.05 추가 2024.01.19 등기>
1. 위 각호에 부대하는 전자상거래업	<2024.01.05 추가 2024.01.19 등기>
1.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	<2024.01.05 추가 2024.01.19 등기>

임원에 관한 사항	
사내이사 이강호 870403-*****	
사내이사 인준영 880201-*****	
공동대표이사 이강호 870403-*****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50길 28, 101동 1004호(신사동, 로데오현대아파트)	
2022년 06월 22일 공동대표규정폐지 및 사임	2022년 06월 22일 등기
공동대표이사 인준영 880201-*****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9, 102동 1504호(반포동, 아크로리버파크)	
대표이사 인준영 880201-*****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9, 102동 1504호(반포동, 아크로리버파크)	
2022년 06월 22일 공동대표규정폐지	2022년 06월 22일 등기
공동대표이사 인준영 880201-*****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9, 102동 1504호(반포동, 아크로리버파크)	
2024년 01월 05일 공동대표규정설정	2024년 01월 19일 등기
감사 이승주 970428-*****	
2022년 07월 01일 사임	2022년 07월 13일 등기
사내이사 김승현 880209-*****	
2024년 01월 05일 취임	2024년 01월 19일 등기
공동대표이사 김승현 880209-*****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6, 104동 25층 2501호(성수동1가, 트리마제)	
2024년 01월 05일 취임 및 공동대표규정설정	2024년 01월 19일 등기

주식매수선택권	
1.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	
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340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	
이 회사는 회사의 설립,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.직원에게 상법	



등기번호	823415
------	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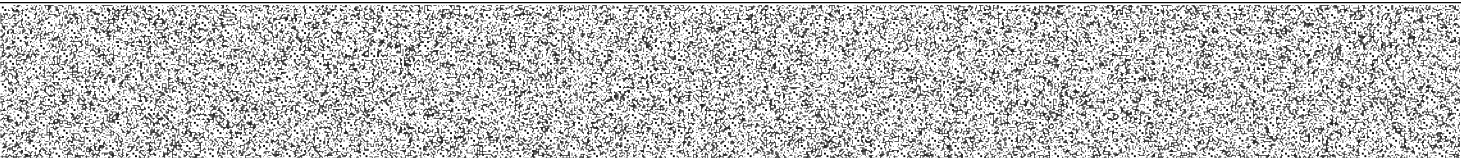
제340조의 2 제1항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단, 이 회사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,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< 2023 년 10 월 11 일 변경 2023 년 10 월 23 일 등기 >

1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
~~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신정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.)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~~
~~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, 임원 또는 직원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~~
 1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)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 2. 회사가 본 조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 수량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가. 회사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교부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 - 나. 회사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교부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서 정한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 3. 피부여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
< 2023 년 10 월 11 일 변경 2023 년 10 월 23 일 등기 >

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
~~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,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~~
 - 1)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
 - 2) 이사,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
 - 3) 위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
 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(이하 피부여자)는 상법에 따라 부여하는 경우 회사의 설립,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.직원,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- 1) 회사의 임직원
 - 2) 회사가 인수한 기업(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의 임직원
 - 3)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서 정한 자
 2.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
 - 1)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



등기번호	823415
------	--------

가.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
나. 이사, 집행임원,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

다.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

2)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하는 경우 (단,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)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)

가.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

나.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

다. 그 밖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계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금지하고 있는 자

< 2023 년 10 월 11 일 변경 2023 년 10 월 23 일 등기 >

1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

~~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날로부터 5년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.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~~

피부여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을 경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(이하 확정일,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차등으로 증가되는 경우에는 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확정수량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을 의미한다)까지 재임 또는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(다만,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)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, 확정된 부여수량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정한다.

< 2023 년 10 월 11 일 변경 2023 년 10 월 23 일 등기 >

1.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

~~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~~

~~1)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~~

~~2)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 경우~~

~~3)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~~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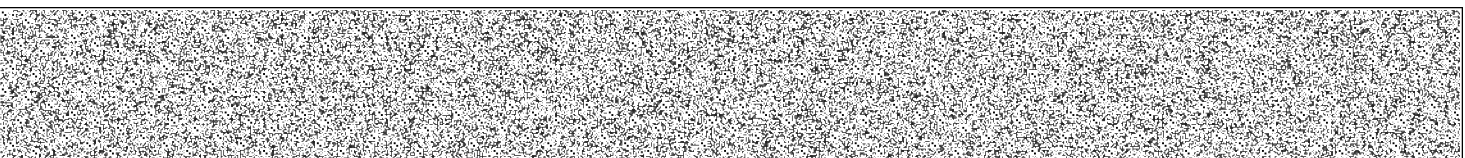
1. 피부여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

2. 피부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. 이사 또는 감사인 피부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도 같다.

3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
< 2023 년 10 월 11 일 변경 2023 년 10 월 23 일 등기 >

회사성립연월일	2022 년 03 월 17 일
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

등기번호	823415
------	--------

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	2022 년 03 월 17 일 등기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/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
수수료 1,000원 영수함



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[다만, 신청이 없는 지점·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]
서기 2024년 01월 22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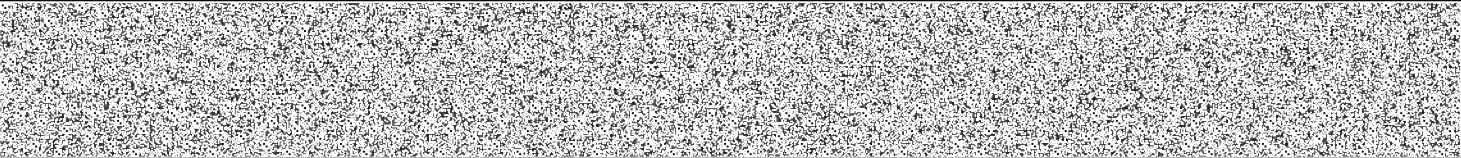
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

전산운영책임관

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[인터넷 발급]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

발행번호 1130005015701020221100422005211403U2A8D1D1N1A0L101 1 발급확인번호 4156-AAXL-CVPO 발행일:2024/01/22